
한국의 전파법 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신현식*

A Study on Radio Wave Law Revision Content for Korea

Hyun-sik Shin*

요 약

이 논문은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의 등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동안 분리되어 규제된 방송과 통신에 대한 법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전파법의 변천사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dissertation on today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ique development consist according to new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ppeared fusion-service in earnest legislation's change abou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egulate the while separation. On that score, radio wave law's change on environment change has been lively producing.

키워드

Radio Wave Law's, Information Communication, Frequency

1. 서 론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전파법 개정으로 전파자원의 확보, 배분, 이용, 보호의 전파관리 체계와 전파진흥 규정 정비 등으로 자원확보, 관리 및 진흥의 법적 성격을 포함하게 되었다. 전파법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 등 상업용 주파수에 대해서는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과도한 경쟁, 경매가의 요금전가 등 경매제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최종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반면, 정부가 시장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기초로 주파수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원리를 반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 주파수 이용권의

임대 허용, 심사할당 주파수 이용기간 부여 등 주파수 이용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1].

2008년 2월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관리 및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년 11월에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편, 무선국 검사 개선, 환경친화 무선국 확대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09년 6월말 현재까지 전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전파법 개정 현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대효과 및 조속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전남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심사완료일자 : 2009. 08. 24

접수일자 : 2009. 07. 01

II. 전파법 개정안의 내용

2008년 11월 전파법 개정의 주요 사유는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에는 시장기능을 통해 주파수 가치를 산정하고, 무선설비 성능향상 등에 다른 전파이용자 불편을 해소와 기업친화적인 선진국형 방송통신기기 인증체계 기반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그림1은 전파법 체제 현황을 제시하였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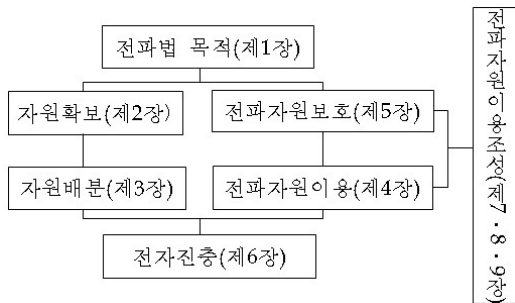


그림 1. 현재 전파법 체제 현황
Fig. 1 The present radio wave law's formation

2008년 새 정부에서 개정이유는 한정된 공공자원인 주파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주파수 할당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개혁과제 중 하나인 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라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면, 어렵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파수할당의 심사기준, 주파수 회수와 할당 취소 요건 등의 정비(법 제6조의 2의,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 15조의2)를 통하여 대가를 받고 신규로 주파수를 할당 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는 심사기준이 없고, 주파수의 회수와 할당취소 요건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사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대가를 받고 할당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 회수와 할당취소 요건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또한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 취소 요건 등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정

하고 투명한 주파수할당 및 할당취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 (2) 대가를 받고 할당하는 주파수의 이용권을 양수·임차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게 되어있어 기존 가입자 보호의 필요성과 주파수의 독과점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후 승인제도를 사전 승인제도로 변경하는 등 주파수 이용권의 양수·임차 승인제도의 개선(법 제14조)을 통하여 기존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고, 주파수 독과점 등 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3) 무선국의 허가 또는 무선종사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친위적인 재량행위인 무선국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사유 중 포괄적으로 규정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를 삭제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취소·정지사유 등의 행정처분사유 구체화(법 제72조 및 제76조)함으로써 행정 재량권의 객관성·공정성 확보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3]. 이에 전파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주파수 할당제도, 방송통신기기 인증체계,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주파수 할당제도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등 기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파수를 할당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과급효과가 큰 경우, 경쟁적 수요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고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대역의 산정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의 해당 서비스의 예상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전파이용 기술 및 서비스 등의 급격한 변화 및 융합의 진전에 따라 시장 전망에 기초한 할당대가의 산정에 대한 한계, 할당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이 지적되었다.

2008년 말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 일본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여 실제로 주파수를 할당하거나 할당을 계획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현재의 대가할당 방식 이외에 가격경쟁(경매)에 의해서도 할당할 수 있도록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통해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신청자간에 가격을 경쟁함으로써 할당이 결정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주파수의 헐값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경쟁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매대금은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상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편입되도록 하였다.

표 1. OECD 주요 국가별 주파수 경매제 도입현황
Table 1. The major nation frequency auction act introduce present OECD

국가	도입 여부	비고
미국	○	'94년 PCS 경매시 도입
영국	○	'00년 3G 주파수 경매
호주	○	'93년 PCS 경매시 도입
독일	○	'99년 2G 사업자 추가 선정시 도입
벨기에	○	'01년 3G 주파수 경매
이탈리아	○	'00년 3G 주파수 경매
프랑스	○	규정 도입 후 경매 예정
핀란드	○	규정 도입 후 경매 예정

2.2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방송통신기기의 성능, 품질향상,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다양한 융복합기의 사용증가,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등재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대상기기의 용도에 따라 구분되었던 시험 및 인증체계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시험 및 인증 체계에 관하여 전파법으로 일원화하고, 방송통신기기 위해정도, 불량률 및 인명안전 관련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인증유형을 재분류 하고, 적합성 평가절차 간소화 및 신제품에 대한 잠정 인증제도 도입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잠정 인증제도는 적합성 평가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신제품의 경우에는 전파환경에 위해를 주지 않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잠정인증을 허용하여 조기에 제품이 출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4].

2.3 무선국의 운용 관리

무선국은 전파를 송. 수신하는 무선설비로서 주파수와 함께 전파관리의 핵심요소이고,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일백만개가 넘는 무선국의 허가 및 신고대상 무선국이 운용되고 있다. 전파이용 기술의 보편화 및 무선국 장비의 성능이 개선됨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 등의 무선국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등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주파수를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운용되는 무선국으로서 전파의 혼신, 간섭의 우려가 적은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하여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추출 방법으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표본추출 검사 결과 불합격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둘째,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 보호를 위해 시설자에 대한 환경 친화 무선국 설치명령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권리제한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화 하였다. 셋째, 무선국 사후관리의 실효성에 제고를 위해 혼신유발 등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단속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이동통신 등 새로운 수요해 대비하여 주파수 회수, 재배치 관련 손실보상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현행 전파법 규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손실보상 주체로 되어 있으며, 다수의 시설자들이 이전하는 경우등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보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기관에 이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5].

2.4 전파법 시행령 주요 개정 현황

시행령의 개정이유는 전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는 한편, 규제위주의 현행 전파법이 전파자원의 확보·배분·이용 및 진흥 중심으로 전문개정(2000. 1. 21, 법률 제619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이 영의 체계를 전면개편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1) 방송통신위원장은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를 회수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하고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도록 함(영 제3고).
- (2)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하기 전에 할당대상 주파수,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시기와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출기준 등을 공도하도록 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는 3년 이내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함(영 제4조 및 제6조 제 1항).
- (3)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등에 대하여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대신에 방송통신위원장의 주파수사용승인을 얻어 개설했을 수 있도록 함(영 제31조).
- (4) 국·공립 공원지역 및 개발 제한구역 등에 설치되는 무선설비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도시계획구역에 설치되는 무선국에 한한다.

III. 전파법 개정파급 효과

현재 개정 중인 전파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향후 국내의 전파관리 체계에 미치는 효과 및 전파법 개정의 시급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2월에 경제위기 극복과 방송통신강국 구현을 위한 방송통신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자리 안정을 위한 투자 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 전략의 일환으로 전파자원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과 전파의 창의적 이용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동통신사업자의 신규 설비투자 유도와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1GHz 대역 간

여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여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800MHz~900MHz 대역의 우량 주파수를 회수하여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재배치를 통한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을 통해 '09년에는 2천억원의 설비투자를 시작으로 '13년까지 약 3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제도와 관련하여 개정 전파법에서는 가격경쟁에 의한 할당방식, 즉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효과를 전파관리 제도와 신규 주파수할당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전파관리 제도 측면에서 주파수 경매제 도입은 실질적으로 시장기반의 전파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 현재 규제기관 중심의 주파수할당에서 시장원리 중심의 주파수할당 및 할당대가 부과방식으로 체계의 전환을 의미한다. 주파수 경매제를 통해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시장가치가 부여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할당대가 제평가, 주파수 임대시 적정 임대료 등 주파수 이용대가에 대한 정보가 제시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시장기반의 전파관리 체계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재의 주파수 경매방식은 기존의 대가할당 방식에서 할당대가를 정하는 방식의 다양화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가할당 방식에 따라 할당된 주파수 또는 이용자와 주파수 이용권 등에 있어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파수 경매제를 통해 해당 주파수에 대한 적정 이용대가 부과 및 보다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가할당 주파수의 경우에도 전파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권의 부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것으로 예상된다.[6]

'09년 신규 주파수할당 측면에서 기존의 규제기관 중심의 대가할당 방식과 신청자간 가격경쟁중심의 대가할당 방식 중에서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전파법 개정으로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될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며, 적정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주파수 경매제를 주파수 할당 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09년은 이동통신 주파수의 재편과 관련하여 중요

한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용도의 우량 주파수 대역인 800MHz와 900MHz 대역의 할당을 통해 후발 및 신규사업자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주파수 할당시 기존의 규제기관 중심의 대가할당 체계에서는 향후 10년간의 이동통신 시장을 예측해서 이를 기초로 할당대가를 산정함에 따라 예측을 위한 장기간 소요,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할당대가의 과대 및 과소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주파수 경매제를 통하여 할당 대상 및 절차에 대한 설계를 기초로 신청자간 가격경쟁에 의해서 할당대가가 산정될 경우 보다 신속하게, 적정 시장 가치를 반영하여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09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시 주파수 경매제 적용을 고려한 할당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전파법 개정이 조속히 필요한 상황이다.

3.2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의 자유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무역장벽 해소 방안으로 방송통신기기에 대하여 교역 상대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또는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기기 인증체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의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의 경우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위해정도 및 인명안전 관련 여부를 고려하여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 적합성 평가절차를 간소화를 추진하였다.

기기 제조자가 스스로 제품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적합등록의 경우 정부의 심사 및 인증서 발급 절차가 면제되어 적합성 평가기간은 최대 30일, 비용은 건당 70~180만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신제품에 대하여 잠정인증을 통해 우선 제품을 출시하고, 사후적으로 적합성 평가(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를 받도록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잠정인증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제품 출시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6개월~1년에서 1~2개월로 단축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7].

이와 같이 전파법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기기 인증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내 방송통신기기 제조업체의 제품 출시의 단축과 비용부담의 완화 등이 개선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제품을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방송통신기기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3 무선국의 활성화 방안

무선국 운용 관련하여 샘플방식의 준공검사 제도도입, 환경친화적 무선국 개설명령 근거규정 마련, 무선국 사후관리 강화 등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무선국 검사의 규제 완화를 통해 이동통신 등 사업자는 조기에 무선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환경친화적 무선국 개설명령은 사업자등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09년 5월에 발표된 전파진흥 기본계획에 의하면, 방송통신 위원회는 향후 저탄소, 친환경 무선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태양광 이용 무선국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무선국 등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무선국 관련 생활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무선국 관련 사전적인 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실용성 있는 규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규제의 강화는 중요하다.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현장 단속, 벌칙 강화 등의 사후규제는 예방적인 측면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파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보다 조속히 전파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무선국 이용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V. 전파법 연구의 범위

4.1 전파법 총칙규정의 주요 이슈

최근까지의 전파법 제·개정을 통하여 총칙부분에서는 주파수지정, 할당과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고, 제4조(전파에 관한 조약)를 삭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별 개념정의들 적정성과 제4조의 삭제 타당성을 검토하고, 특히 삭제된 제4조와 관련해서는 ITU 전파규칙 및 국제간 조약 효력의 문제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

4.2 전파자원 확보의 주요 이슈

전파자원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최근 2005년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규정과 손실보상 규정 보완 및 이의신청 규정 신설 및 2008년 제8조(전파진흥 기본계획)가 개정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회수 및 재배치 시행, 손실보상 및 이의신청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파수 회수와 할당대가의 관계를 검토하며, 관련 국내 유사 사례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4.3 전파자원 분배와 할당의 주요 이슈

2000년 주파수 할당, 이용권, 재할당, 전환 등 주파수 분배·할당 체계가 도입된 이래, 2008년 주파수 할당 신청자 범위 제한, 주파수할당 심사기준, 주파수할당 취소 등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파수할당의 법적 성격, 신청 범위 제한 및 주파수할당 취소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파수이용권의 법적 성질과 권리범위 및 한계 등에 대한 검토 및 공적 자원에 대한 상업적 이용의 권리부여 사례 등에 대한 비교·분석이 요구된다.[8]

4.4 전파자원 이용규율의 주요 이슈

무선국 개설과 관련해서는 허가유효기간 및 허가승계 등을 규정하고, 국가 또는 안보용 등 주파수는 사용승인으로 이용을 허가하고, 혼신방지 및 통신 보안 준수 등을 규정하였으며,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우주통신의 운용 등을 규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선국 종류에 대한 사항을 ITU의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하여야 하고 주파수 사용승

인의 법적 지위를 주파수 지정 및 할당과 관계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유효기간의 적정성 및 그와 관련한 국내 및 ITU의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에 따른 방송국 개설절차 적정성과 우주통신 관련 위성궤도 및 주파수 확보 및 할당과 주파수 할당(10조)의 관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5 전파자원 보호의 주요 이슈

전파자원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기술기준, 안전시설의 설치, 전파감시, 조사 및 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전파장애 방지기준 및 전자파적합등록 등을 규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파감시, 조사 및 조치, 자료의 제공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기준, 안전시설의 설치, 전파환경 측정등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도 국내 유사 관련 사례와 ITU의 사례 비교·분석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4.6 전파진흥의 주요 이슈

전파진흥과 관련해서는 주파수 이용현황 공개, 전파분야 연구, 기술개발 촉진, 표준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전파의 진흥 규정과 전파진흥 재원으로 전파사용료 부과근거 및 그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해서는 전파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전파법 내의 전파진흥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파사용료 부과 및 지출 목적의 타당성 및 할당대가와 관계 등 국내 유사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그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10]

4.7 전파법 보칙규정의 주요 이슈

최근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징수,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이 규정되고, 전파이용 사전규제 완화에 따라 이용제한, 취소 및 과징금 등의 규정이 강화된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취소 등 이용제한, 과징금 부과, 권한의 위임·위탁 등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V. 결 론

현재 08년 12월에 마련된 전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에 따른 효과 및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파법의 개정은 전파관리 체계의 전화와 더불어 전파이용자 및 시설자의 불편해소 등을 위해 중요한 상황이다.

첫째, 주파수 할당제도 측면에서 현행 규제기관 중심의 대가할당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시장기반의 가격경쟁(경매)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파관리 체계의 실질적인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히 09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정책 수립시 정책적으로 선택 가능한 방안이 다양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800MHz, 900MHz, 2.1GHz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시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며, 신청자간 경쟁(시장원리)에 의한 대가 산정이 가능한 경매방식에 의해 주파수를 할당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절차 및 기준 등을 정비하여보다 신속하고, 적은 부담으로 기기를 제조·판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파법 개정을 통해 보다 조기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시행될 경우에는 제품 출시에 필요한시간과 비용 등의 절감 효과가 조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송통신기기 관련 새로운 인증체계가 조기에 정착되어 국내 기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무선국 운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무선국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환경친화형 무선국 개설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전파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무선국 운용 관련 제도의 경우에도 전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며, 조기에 개정될 경우에는 제도 개선의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파자원은 방송과 통신을 포함하여 의료, 행정, 치안 및 국방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전파자원의 이용 확대에 대비하여 효율적 관리 및 전파이용자 편익을 위한 주파수 할당체계 개선, 방송통신기기 인증체계 개편, 무선국 운용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할 시점이다.

참고 문헌

- [1]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pp.12-20, Nov. 2008.
- [2] 경제위기 극복과 방송통신강국 구현을 위한 방송통신 10대 추진과제, pp.35-43, Dec. 2008.
- [3] 신현식, 전파통신관계법규, 광문각, pp.25-30, 2003.
- [4] 2008년 연차보고서, pp.27-35, March 2009.
- [5] 전파진흥기본계획(안), pp.57-65, May 2009.
- [6] 한국전파진흥원, 전파법 해설집 발간 연구, pp.5-12, 2008.
- [7] 최계영 외2인, 전파관리정책의 구조와 패러다임의 변화, KISDI 이슈리포트, pp.105-110, 2007.
- [8] Holznagel Enaux Nienhaus, Telekommunikationsrecht, pp.55-60, 2006.
- [9] www.crho.go.kr
- [10] www.dreaminno.com

저자 소개

신현식(Hyun-sik Shin)



1969년 2월 광주대학교 무선통신공학과 졸업(공학사)
1980년 8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1995년 8월 경남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현재 전남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교수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대학원장

(사)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명예회장

(사) 한국전자통신학회 회장

※ 관심분야 : 정보통신, 통신정책, 데이터통신